제 13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년 04월 04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1동 담당자 : 손현희 문의전화 : 02-450-1287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예 *원 1992-12-27	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1길 (자양동)	무단전출
방 *덕 1948-07-15	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49길 (자양동)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

2022년 03월 25일

자양제1동장 인